

인증지원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신청시기 : 연중수시 지원대상 : 대·중견·중소기업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 「향교재산법에 의한 종교법인」 등

■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으로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연구소·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의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특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인 사람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전담요원 자격 유지(중소기업→중견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인정당시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요건으로, 연구전담요원에 등록되어 해당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는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후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위 내용을 준용하되,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연구공간 기준]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의 전용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으로만 사용하는 기계, 가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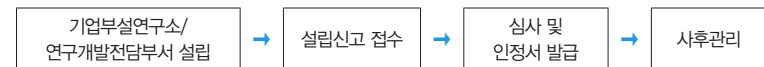
■ 지원내용

구분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
관세지원제도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자금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
인력	전문연구요원제도	○	X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
기타	벤처확인(연구개발기업)	○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 신청방법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온라인신고

[추진절차]



■ 문의처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RND.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02-3460-9012, 9013, 9014, 9015, 901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운영지원팀 (☎ 02-3460-9142, 9143, 9144, 9145, 9146, 9147, 9148, 9149, 9150)